

투자위험등급 :
1 등급
[매우 높은 위험]

대신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대신 창조성장 중소형주 증권투자신탁[주식]**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신 창조성장 중소형주 증권투자신탁 [주식]**을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대신 창조성장 중소형주 증권투자신탁[주식](AI632)

종류(클래스)	A	A-e	C1	C2	C3	C4	C-e	C-F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AI633	AI634	AI635	AI636	AI637	AI638	AI639	AI640

2. 집합투자기구 분류 :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3. 집합투자업자 명칭 : 대신자산운용 주식회사 (02-769-3233)

4.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ditm.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

5. 작 성 기 준 일 : 2014.07.06.

6.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4.07.11.

7.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 10 조좌]

8.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9. 존 속 기 간 :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10.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협회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상세목차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목적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3. 주요 투자위험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5. 운용전문인력
6. 투자실적 추이
 - 가. 연도별 수익률

II. 매입·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2. 과세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 가. 기준가격 산정
 - 나. 매입 및 환매 절차
 - 다. 전환절차 및 방법

III . 요약 재무정보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참고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하는 경우 투자설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 보험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 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형)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을 재무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지속성장이 가능한 중소형주에 투자합니다. 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형주를 편입하여 중소형주로 대체 할 수 없는 산업이나 종목에 투자하여 변동성 축소 및 초과 수익을 추구합니다.

(1) 포트폴리오 투자대상

- 원칙 : 중소형주에 투자
- 중소형주의 정의 :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주식을 중소형주라 합니다. 다만, 주식의 편입시점은 중소형주에 해당하였으나 편입이후 중소형주에 해당하지 않게 된 종목은 중소형주로 볼 수 있습니다.
 - 가. 편입일 전일 증가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100위 이내의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
 - 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종목중 편입일 전일 증가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100에 해당하는 종목보다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
 - 다.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4조제1항제1호의2의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종목

(2) 포트폴리오 운용전략

- 1) 국정과제 및 정책 테마 관련 중소형 주식에 집중 투자합니다.
 - ① 중소, 중견기업 육성 정책, 여성고용 확대 및 육아지원, ICT와 의료 통합 등 정부 정책 관련 핵심 기업에 투자
 - ② 정책을 통한 생산 및 소비 트렌드(유행) 변화에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한 기업.
 - ③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SW), 문화콘텐츠 산업을 통한 내수와 서비스업 성장 관련 기업.
 - ④ IT 및 통신에서 다른 산업으로 확산을 통해 성장하는 컨버전스형 기업에 투자.
 - ⑤ 인구구조학적인 생산 및 소비 트렌드(유행) 변화 관련 기업에 투자.
- 2) 구조적인 성장성을 보유한 중소형주에 투자합니다.
 - ① 신성장 동력 산업의 매개가 되는 기술을 보유하거나, 원재료를 생산하며 가격 경쟁력을 가진 신성장동력을 보유한 기업
 - ② 높은 시장 지배력(브랜드 밸류)를 가진 기업으로 장기 불황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
 - ③ 트렌드(유행) 변화(시대정신, 정부정책, 소비패턴)에 따른 구조적인 성장 기업
 - ④ 변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이 예상되는 기업

※ 비교지수: [KOSPI 대형지수 X 40%]+[KOSPI 중형주지수 X 60%]

※ KOSPI 대형지수 및 KOSPI 중형주지수는 한국거래소(KRX)가 작성하여 발표하는 지수로 (www.krx.co.kr)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시장상황,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등에 따라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3) 위험관리

- ▶ 투자자산간 또는 투자자산내에 분산투자 및 손절매 제도 시행으로 투자위험을 관리합니다
- ▶ 재무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지속성장이 가능한 중소형주 발굴을 통해 주기적인 포트폴리오 재구성과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을 줄입니다.
- ▶ 적극적인 자산배분을 지양하고, 시장상황을 고려해 탄력적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 ▶ 대형주 편입비중을 통해 변동성을 줄이고 위험분산 투자 효과를 추구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 신고)하여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3.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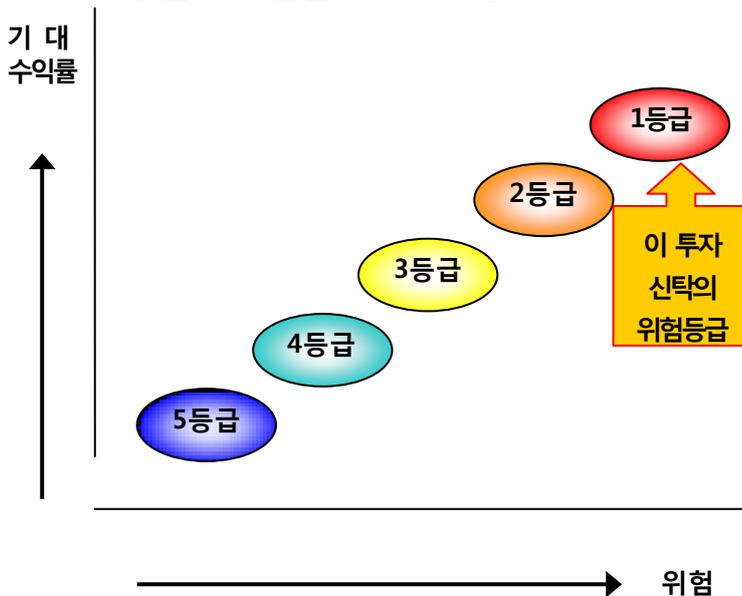
※ 다음의 투자위험은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주요 투자위험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이하 “투자원금액” 이라 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는 투자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투자원금액의 손실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종목위험	주식, 채권 등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투자대상종목의 가치는 해당종목 발행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등 비교적 안전자산이라 할지라도 해당 종목의 가격변동에 의해 원금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당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식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대상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당해 투자신탁의 가치도 일정수준 하락하게 됩니다.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종목)	이 투자신탁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소수 종목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일부 종목의 집합투자기구에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섹터)	이 투자신탁은 일부 산업에 속하는 증권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투자한 특정 섹터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적극적매매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수행할 수 있으며, 통상 이러한 전략은 상대적으로 높은 매매비용을 수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동 전략은 일반적으로 시장수익률과 괴리가 클 수 있으므로, 기대수준이 시장수익률수준인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예상배당 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에 대하여 배당락 기준으로 각 종목별 예상배당액을 추정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에 반영합니다. 이 때 예상 배당금액은 추후 주주총회에서 확정되는 실제 배당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확정된 실제 배당금액이 예상 배당금액 보다 적어질 경우 투자신탁의 가치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 위험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집합투자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코넥스 시장 투자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자산총액의 일부를 제3시장인 코넥스(KOrea New EXchange: KONEX) 시장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결여로 인하여 투자자산의 가치 하락 및 환매가 연기 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넥스시장은(KONEX)은 초기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쉽게 해주기 위하여 개설된 제3의 주식시장으로서 거래소 및 코스닥시장에 비하여 투자위험이 더 크고 정보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유동성(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주식형)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위험 **5등급중 1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수익자는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주식은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주식시장 하락에 따른 원본 손실 및 시장 변동성 등 관련된 투자위험을 감내할 만한 위험선호도를 가지고 있으며, 상기 위험수준을 이해하면서 본인의 투자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시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위험등급분류는 대신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입니다.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5. 운용전문인력 (2014.07.11. 기준)

가.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 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 규모	
김명식	1979	책임 운용역 (팀장)	-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2006년 대신증권(주) 입사 2007년 대신투자증권(주) 주식운용본부 2010년 창의투자자문(주) 주식운용 2013년 대신자산운용(주) 주식운용본부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본부가 운용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 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 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상기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http://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없음

주4) 상기의 집합투자기구 수에는 모두투자신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 최근3년간 운용전문인력 변동 사항 :

구 분	운용전문인력	운 용 기 간
책임운용역	서 재 형	2013.06.24~2014.07.10
부책임운용역	김 명 식	2013.06.24~2014.07.10
책임운용역	김 명 식	2014.07.11~ 현재

6. 투자실적 추이 [연도별 수익률]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하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13.07.07 ~14.07.06	13.06.24 ~13.07.06			
투자신탁(전체)	11.90				
A	10.34				
A-e	10.69				
C1	9.55				
C-e	10.53				
비교지수	7.89				

주1) 비교지수 : [KOSPI 대형지수 X 40%]+[KOSPI 중형주지수 X 6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6)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II. 매입·환매관련 정보

1. 보수 및 수수료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가입자격
A	제한없음(선취판매수수료 징구)
A-e	온라인(인터넷)을 이용하여 투자하는 투자자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C1	제한없음
C2	C1 수익증권을 1년이상 보유한 투자자
C3	C2 수익증권을 1년이상 보유한 투자자
C4	C3 수익증권을 1년이상 보유한 투자자
C-e	온라인(인터넷)을 이용하여 투자하는 투자자
C-F	-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의 각목의 금융기관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50 억원 이상 매입하고자 하는 법인

나.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클래스)	A	A-e	C1	C2	C3	C4	C-e	C-F	부과시기
선취 판매수수료	납입금액 의 1% 이내	납입금액 의 0.5%이내	없음						매입시
환매 수수료	30 일 미만 : 이익금의 70%, 30 일 이상 90 일 미만 : 이익금의 30%								환매시
전환수수료	-	-	-	-	-	-	-	-	전환시

* 선취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범위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등적용의 내용은 금융 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환매수수료를 징구합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A	A-e	C1	C2	C3	C4	C-e	C-F	
집합투자업자	0.7000	0.7000	0.7000	0.700	0.700	0.700	0.7000	0.7000	매3개월 후급
판매회사	0.7000	0.3500	1.4500	1.0000	0.8000	0.7500	0.5000	0.0500	
신탁업자	0.0300	0.0300	0.0300	0.0300	0.0300	0.0300	0.0300	0.0300	
일반사무관리	0.0200	0.0200	0.0200	0.0200	0.0200	0.0200	0.0200	0.0200	
기타비용	0.0024	0.0015	0.0024	-	-	-	0.0024	-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1.4524	1.1015	2.2024	1.7500	1.5500	1.5000	1.2524	0.8000	-
증권거래비용	1.8102	1.7656	1.8049	-	-	-	1.7711	-	사유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3.06.24 ~ 2014.06.23]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3.06.24 ~ 2014.06.23]

주3)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1,000원)

종류(클래스)	1년	3년	5년	10년
A	247	554	883	1,812
A-e	162	399	654	1,383
C1 (CDSC Class)	226	695	1,191	2,555
C-e	128	399	690	1,518
C-F	82	256	446	993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선취판매수수료 Class A : 1%, Class A-e : 0.5% 가정)

주2) Class C1 과 Class A의 종류별로 총 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1년4개월 이 되는 시점이나 , class 유형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과세

가. 과세에 관한 사항

과세대상	과세원칙	세율	과세시기
투자신탁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
수익자	원천징수 원칙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됨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이익을 지급받는 날

나. 과세에 관한 사항

- 미국 해외계좌의무납세법(FATCA)은 미국 고용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the 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HIRE))의 일환으로 미국 의회가 2010년에 제정한 법률입니다. FATCA는 미국 납세자들에 대한 정보를 미국 세무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 이외지역에 금융자산 및 계좌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 납세의무자들의 납세의무 준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FATCA는 펀드 및/또는 하위펀드의 등록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보고 및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보고 요구사항의 한 예를 보면, 펀드내 특정유형의 투자자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공개하는 것입니다. FATCA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펀드 및/또는 하위펀드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미국에서 발생된 이자 및 배당 등과 같은 특정유형의 지급금에 대하여 30%의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펀드 및 하위펀드가 FATCA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FATCA를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펀드는 특정 투자자의 정보를 미국 세무당국에 보고하거나 공개할 수도 있으며, 그러한 투자자들에 대한 특정 지급금을 보류할 수도 있습니다. 펀드는 또한 펀드의 단독 재량으로 투자자의 보유지분을 강제로 환매하거나 투자자가 보유한 계좌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위와 같은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도록 투자자들은 펀드에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투자자들은 그들이 미국 납세의무자들이거나 미국 납세의무자로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펀드의 판매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펀드 및 하위펀드가 등록되어 있는 국가)이 정부간 협정(Intergovernmental Agreement(IGA))을 체결하는 경우, 정부는 FATCA 필요조건들(펀드 및 하위펀드가 따라야 하는 국내 법령들의 수정, 개정, 면제 등 포함)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간에 IGA가 체결되는 경우, 펀드 및 하위펀드는 해당 IGA의 적용을 받게 되며 관련 법령도 적용받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FATCA 및 IGA로 인하여 그들의 세금에 미치는 영향 및 예상되는 결과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 미국 납세의무자(US Taxpayers)

- 미국 납세의무자"라 함은 미국 시민권자, 미국 거주자, 미국 법률 또는 미국의 특정 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미국에서 설립된 파트너십이나 기업을 의미합니다. 또한, 신탁의 경우, 만약 (i) 미국의 어떤 법원이 적용가능한 법률에 의거하여 신탁의 관리에 관한 모든 이슈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명령이나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ii)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미국 납세자들이 신탁이나 미국의 시민 또는 거주자인 사망자의 부동산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신탁(trust)도 미국납세자에 해당됩니다. 미국 납세자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미국 세법에 따라 해석됩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을 상실한 자와 미국이외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들은 어떤 환경하에서는 미국 납세자로 간주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펀드의 지분은 어떠한 미국 납세자의 계좌에게도 청약이 권유되지 않아야 하며, 또한 판매되어서도 안됩니다. 펀드가입 신청자들은 그들이 미국 납세자가 아니며, 그리고 그들이 미국 납세자를 대신하여 펀드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며, 미국 납세자들에게 펀드의 지분을 매도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펀드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님을 선언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미국 납세자의 펀드 지분을 강제로 환매할 수 있습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가. 기준가격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ditm.co.kr)·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펀드간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펀드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나. 매입 및 환매 절차

구분	오후 3시 이전	오후 3시 경과후
매입	<p>-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다음 영업일(D+1)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p> <p style="text-align: center;"> </p>	<p>-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 3 영업일(D+2)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p> <p style="text-align: center;"> </p>

환 매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 2 영업일(D+1)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제 4 영업일(D+3)에 환매대금을 지급	공 적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제 4 영업일(D+3)에 환매대금을 지급	공 적

다. 전환절차 및 방법

-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종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Class 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1. Class C1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Class C2 수익증권으로 전환
 2. Class C2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Class C3 수익증권으로 전환
 3. Class C3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Class C4 수익증권으로 전환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합니다. 다만, 전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합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클래스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의 매입 또는 환매청구 등에 따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매입 또는 환매청구 등에 따른 절차가 처리된 이후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할 수 있습니다.
- ⑤ 신탁계약서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1.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2.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III . 요약 재무정보

(단위 : 원,%)

통합대차대조표			
항 목	제 1기		
	(2014.06.23)		
운용자산	14,315,580,182		
증권	14,314,310,000		
파생상품	0		
부동산/실물자산	0		
현금 및 예치금	1,270,182		
기타 운용자산	0		
기타자산	1,363,274,763		
자산총계	15,678,854,945		

운용부채	0		
기타부채	1,390,672,673		
부채총계	1,390,672,673		
원본	13,669,208,814		
수익조정금	575,221,897		
이익잉여금	43,751,561		
자본총계	14,288,182,272		
통합손익계산서			
항 목	제 1기		
	(2013.06.24 - 2014.06.23)		
운용수익	279,352,928		
이자수익	13,720,430		
배당수익	137,550,750		
매매/평가차익(손)	128,081,748		
기타수익	5,665,062		
운용비용	218,620,657		
관련회사 보수	218,620,657		
매매수수료	0		
기타비용	3,767,259		
당기순이익	62,630,074		
매매회전율	811.29		